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20. ~ 11. 2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25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42호
----------	--------

발의년월일 : 2020. 11. 19.

발의자 : 박종호 의원
이현재 의원

1. 제안이유

- 순천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소송비용 지원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규정(안 제4조 ~ 제6조)
- 소송비용 환수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조례안 : 붙임
- 입법예고 : 5일 이상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등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순천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순천시의회에 순천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순천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9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800,000 1,000,000	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 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다만, 화해의 성립, 인락, 피고경정, 소취하(쌍불취하 포함)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지급액의 반액을 지급한다.(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 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감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 5. 그 밖의 실비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5천만원 미만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1억원 이상	2,500,000 3,000,000 4,000,000		
	3. 상고심 및 환송심	원심의 1/2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	1. 일반사건	2,000,000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5,000,000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3,000,000이내		1. 출장여비 :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 2. 그 밖의 실비
	2. 다수 관련사건	5,000,000이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7,000,000이내		

-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 가. 착수금 신청 : 신청서, 소가 증명원
나. 승소사례금 신청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다.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등 해당서류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1)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
 -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순천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착수금 신청 ☐ 승소사례금 신청 ☐ 기타비용 신청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해당 상임 (특별)위원회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고인	
		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분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분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행보증보험 1부. 4. 기타 증빙서류 등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제9조 관련)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337호
----------	--------

발의연월일 : 2020. 11. 17.

발 의 자 : 이영란 의원

1. 개정이유

- 공유재산심의회 심사 범위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대상 확대로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우리 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 대상 확대

(안 제4조제4항제4호 다목 신설)

-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가. ~ 나. (생략)

- 다. 순천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신설)

-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가능 대장가액 변경(안 제5조제2항제3호)

- (기존) 5천만원 이하 → (변경) 3천만원 이하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제5조제2항제3호 중 “5천만원” 을 “3천만원”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순천시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가. ~ 나. (생략) (신설) ⑤ ~ ⑬ (생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대장가액 <u>5천만원</u>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u>다.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u> ⑤ ~ ⑬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3천만원</u> -----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1. 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3. 3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41호
----------	--------

발의연월일 : 2020. 11. 19.

김영진 의원 박계수 의원

발 의 자 : 박종호 의원 박종호 의원
이복남 의원 이현재 의원
오행숙 의원 김미연 의원

1.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아동학대 금지, 시장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안 제7조~제8조)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 예산지원, 교육 및 지도·감독 (안 제10조~제12조)
-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13조~제14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순천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순천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 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 1. 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020. 4. 7.>
2. 삭제 <2020. 4. 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2020. 4. 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

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병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343호
----------	--------

발의연월일 : 2020. 11. 20.

발 의 자 : 최병배 의원

1.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4조)
-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안 제5조)
- 업무의 위탁, 포상(안 제6조 ~ 제7조)
- 기록·관리(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순천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만 해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③ 읍·면·동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순천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목개정 2019. 12. 3.]

[시행일 : 2021. 12. 4.] 제6조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44호
----------	--------

발의연월일 : 2020. 11. 20.

발의자 : 박재원 의원 허유인 의원
박종호 의원 이현재 의원
박혜정 의원 이복남 의원
김영진 의원

1. 제정이유

-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보조금의 지급,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시행규칙(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활동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
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적십자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약칭: 적십자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2. 10. 2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5조(정관)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5. 12. 29.>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12. 10. 22.]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2. 10. 22.]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장 의결기관 <개정 2012. 10. 22.>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전문개정 2012. 10. 22.]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개정 2016. 12. 2.>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2. 10. 22.]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2. 2.>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5. 적십자사의 기구(機構)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 2017. 7. 26.>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2.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2. 10. 22.]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의결
2.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 2017. 7. 26.>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2. 10. 22.]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회장은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2.>

②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장 집행기관 <개정 2012. 10. 22.>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 12. 2.>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2. 10. 22.]

[제목개정 2016. 12. 2.]

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개정 2016. 12. 2.>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2. 10. 22.]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2. 10. 22.]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2.>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⑤ 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2. 10. 22.]

제19조(사무처)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 12. 2.>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장 재정 <개정 2012. 10. 22.>

제20조(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용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매매·증여·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3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5장 보칙 <개정 2012. 10. 22.>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2. 적십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출판 사업
3. 자산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 10. 22.]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7조(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6장 벌칙 <개정 2012. 10. 22.>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9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9명”을 “28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2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1. 16.

1. 개정이유

-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조례개정 등 규제개선 분야” 조치 대상
-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맞게 수정

2.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항)
 -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추가
- 양성평등 위촉사항 반영(안 제2조제3항)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제3항
-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제2항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0. 5. (여성가족과-2043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0. 14. (기획예산실-1413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0. 15. (순천시 공고 제2020-2118호)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인의 위원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받은 의원으로 위촉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나머지 1인의 위원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감사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2호의 2인중에서”를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생략) 1. 3인의 위원은 <u>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u>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u>순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순천시 (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u> <u><신 설></u>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생략) 2. 부위원장은 제1항 <u>제2호의 2인중</u> <u>에서</u> 선임하여야 한다. ③ <u>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u>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 <u>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u> -----. 2. 1인의 위원은 <u>순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받은 의원</u>으로 위촉한다. 3. 나머지 1인의 위원은 <u>순천시 (이하 “시”라 한다) 소속 감사부서의 장</u>으로 임명한다. ② ----- -----. 1. (현행과 같음) 2. ----- <u>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u> ----- -----. ③ <u>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2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1. 16.

1. 개정이유

-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 정원 반영
- 의회의 입법지원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국회·중앙부처에 대응할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 (총 정원) 1,529명 → 1,594명 / * 65명 증 (단위 : 명)

구분	현행	개정	증감 내역			비고
			계	증원	감원	
총계	1,529	1,594	65	65	0	
정무직	1	1	-	-	-	
일반직	1,491	1,554	63	63	-	5급 2 6급 이하 61
별정직	1	3	2	2	-	5급 1 6급상당이하 1
연구직	7	7	-	-	-	
지도직	29	29	-	-	-	

○ (의회사무국) 전문적 입법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위원 신설 및 정원 3명(별정직 1, 일반직 2) 증원 의견 반영

○ (별정직공무원 정원 조정) 5급 상당 1명, 국회·중앙부처 대응 전문인력 별정직 운영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있음

의견제출	주요내용	검토
의회 사무국	• 전문적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 입법지원 전문위원 신설 - (조직) 입법지원 전문위원(6급기구) - (인력) 3명 증원(별정직 1, 일반직 2) - (사무) 전문적인 법령검토 및 예산·결산, 국도비 보조금 검토, 의회 특별위원회 지원, 의원 자문·보좌등	반영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1. 9.(여성가족과-2325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1. 9.(기획예산실-1561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해당 없음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29명”을 “1,59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04명”을 “1,566명”으로, 제2호 중 “25명”을 “2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94	1,594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554	1,554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79	32	3	8	12	24
6급이하 계	1,463	1,463				
별정직 계	3	3				
5급상당	1	1				
6급상당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529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594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504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 <u>1,566명</u>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u>25명</u>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u>28명</u>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동
총 계	<u>1,529</u>	<u>1,529</u>					총 계	<u>1,594</u>	<u>1,594</u>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u>1,491</u>	<u>1,491</u>					일반직 계	<u>1,554</u>	<u>1,554</u>				
3급	1	1					3급	1	1				
4급	11	5	1	2	3		4급	11	5	1	2	3	
5급	<u>77</u>	<u>31</u>	3	<u>7</u>	12	24	5급	<u>79</u>	<u>32</u>	3	<u>8</u>	12	24
6급 이하 계	<u>1,402</u>	<u>1,402</u>					6급 이하 계	<u>1,463</u>	<u>1,463</u>				
별정직 계	<u>1</u>	<u>1</u>					별정직 계	<u>3</u>	<u>3</u>				
							<u>5급상당</u>	<u>1</u>	<u>1</u>				
6급 상당 이하 계	<u>1</u>	1					6급 상당 이하 계	<u>2</u>	1	<u>1</u>			
연구직 계	7	7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지도사	27	2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구 : (5급) +1담당관, +1과

○ 정원 증감내역

(단위 : 명)

합 계	일반직		별정직		비고
	5급	6급 이하	5급	6급 이하	
65	2	61	1	1	

2. 비용 소요내역

○ 소요비용 증감내역

(단위 : 원)

구분	1인당 소요비용		증감인원	총 액	비고
합계			65명	3,845,937,880	
일반직	5급	93,089,820	3명	279,269,460	30호봉
	6급	83,101,280	62명	3,566,668,420	26호봉
	7급	65,798,900			17호봉
	8급	45,673,180			7호봉
	9급	35,534,310			4호봉
		평균 57,526,910			

○ 직급별 단가내역

(단위 : 원)

구분	5급(30호봉)	6급(26호봉)	7급(17호봉)	8급(7호봉)	9급(4호봉)	비고
총계(①+②+③)	93,089,820	83,101,280	65,798,900	45,673,180	35,534,310	
①인건비(A+B)	74,853,060	67,614,920	52,451,740	35,510,090	27,643,050	
·기본급(A)	59,086,680	49,797,600	39,530,400	26,505,600	21,069,600	
·수당(B)	15,766,380	17,817,320	12,921,340	9,004,490	6,573,450	
-정액급식비	1,680,000	1,680,000	1,680,000	1,680,000	1,680,000	
-명절휴가비	5,908,680	4,979,760	3,953,040	2,650,560	2,106,960	
-연가보상비	1,693,800	1,427,520	1,133,180	759,810	603,990	
-정근수당	4,923,900	4,149,800	3,294,200	1,546,160	526,740	
-정근수당가산금	1,560,000	1,560,000	960,000	600,000		
-시간외수당(정액분)		1,440,240	1,300,920	1,167,960	1,055,760	
-기타수당(대민활동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②직급보조비	4,200,000	1,980,000	1,860,000	1,740,000	1,740,000	
③이전경비	14,036,760	13,506,360	11,487,160	8,423,090	6,151,260	
-성과상여금	4,584,840	4,584,840	3,898,040	3,283,130	2,256,820	
-연금부담금	6,660,960	6,400,080	5,416,640	3,651,480	2,783,840	
-국민건강보험금	2,531,520	2,287,080	1,970,520	1,350,120	1,007,400	
-장기요양보험금	259,440	234,360	201,960	138,360	103,200	

3. 협의사항 : 해당없음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총무과 인사팀장

장홍상(☎ 749-5457)

송진현(☎ 749-563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2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1. 16.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지침 시달
- 포스트코로나 시대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확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2. 주요내용

- 기구변동(총괄) : +1담당관, +1과

구분	현행	개편	증감
총계	11국·소, 52실·과·소·단, 3전문위, 24읍면동	11국·소, <u>54</u> 담당관· <u>실·과·소·단</u> , 3전문위, 24읍면동	+1담당관, +1과
본청	5국, 3실·27과·1추진단	5국, <u>1</u> 담당관·3실·27과·1추진단	+1담당관
의회	1국, 3전문위	1국, 3전문위	-
직속기관	2소(8과)	2소(<u>9</u> 과)	+1과
사업소	3소(10과), 3소	3소(10과), 3소	-
읍면동	1읍·10면·13동	1읍·10면·13동	-

- 기구변동 세부내역

구분		기구변동내역
5급 기구	담당관 신설(1)	• (보좌기관) 시민주권담당관
	과 신설(1)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1. 2. ~ 11. 9.)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1. 9.(여성가족과-18943)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1. 9.(기획예산실-1561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1. 2.(순천시 공고 제2020-2235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 직속으로 시민주권담당관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을 둔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민주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접민주주의 정책 추진
 2. 시민참여 업무
 3. 직소민원 상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제5조제2항 중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자원봉사 지원

제12조 중 “보건위생과”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u>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을 둔다.</u>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u>시장 직속으로 시민주권담당관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을 둔다.</u>
<u><신 설></u>	② <u>시민주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② (생략)	1. <u>직접민주주의 정책 추진</u>
③ (생략)	2. <u>시민참여 업무</u>
④ (생략)	3. <u>직소민원 상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u>
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③ (종전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④ (종전 제3항과 같음)
1. ~ 12. (생략)	⑤ (종전 제4항과 같음)
13. <u>직소민원 상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u>	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14. ~ 15.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6. <u>시민참여 업무, 자원봉사 지원</u>	1. ~ 12. (현행과 같음)
17. ~ 37. (생략)	<u><삭 제></u>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u>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u> 를 둔다.	14. ~ 15. (현행과 같음)
	16. <u>자원봉사 지원</u>
	17. ~ 37. (현행과 같음)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과) -----
	<u>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u> -----

순천시 이동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2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1. 16.

1. 개정이유

- 2020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연립주택 지역에 통·반을 신설하고, 행정리 구역의 잘못된 지번 정정으로 원활한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별표 1] 해룡면 관할구역
 - 비례리 명칭 정정(비례 → 비래)
 - 신대1 제1반 지번 주소 정정 (신대리 2013 → 신대리 2103)
 - 2개리, 5개반 신설 : 중흥 에듀하이 10차
- [별표 2] 삼산동 관할구역
 - 1개 반 신설 : 휴먼도들새움, 휴먼타운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연간 9,660천원(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9. 15. ~ 2020. 10. 6.)결과 : 의견제출자 있음

- 해룡면 이○○(서면접수) : [별표 1] 해룡면 관할구역 중 잘못 기재된 마을 명칭 정정 요구(비례→비래)

→ 자치혁신과 검토결과 : 수용

- 해룡면지에 비래마을은 마을형상이 연소(제비집)와 같아서 제비가 많이 날아든다고 하여 비래(飛來)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마을 명칭의 유래를 보아 비례가 아닌 비래로 마을 명칭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함.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9. 8.(여성가족과-1849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9. 1.(자치혁신과-11594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9. 4.(기획예산실-1207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9. 15.(순천시 공고 제2020-1911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해룡면 복성리 비례의 명칭과 관할구역, 신대1리 제1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신대32리 다음에 신대33리, 신대34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해룡면	⋮ 복성리 ⋮ 신대리	비례	제1반	비례
		신대1	제1반	신대리 2103 중흥아파트 101동, 131동(상가)
		신대32	제3반	현행과 같음
		신대33	제1반	신대리 1964 중흥에듀하이 1001동
			제2반	1002동
			제3반	1003동
		신대34	제1반	1004동
			제2반	1005동

별표 2 중 삼산동 9통 제2반 다음에 제3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삼산동	⋮	⋮	⋮
	9	2	현행과 같음
		3	441, 442, 442-8, 444, 444-11, 444-17, 557, 733-3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해룡면	북성리	비례	제1반	비례	해룡면	북성리	비례	제1반	비례
	⋮	⋮	⋮	⋮		⋮	⋮	⋮	⋮
	신대리	신대1	제1반	신대리 2013 중흥아파트 101동, 131동(상가)		신대리	신대1	제1반	신대리 2103 중흥아파트 101동, 131동(상가)
	⋮	⋮	⋮	⋮		⋮	⋮	⋮	⋮
		신대32	제3반	912동			신대32	제3반	현행과 같음
	⋮	⋮		⋮	<u><신설></u>		<u>신대33</u>	<u>제1반</u>	<u>신대리 1964 중흥에듀하이 1001동</u>
								<u>제2반</u>	<u>1002동</u>
								<u>제3반</u>	<u>1003동</u>
							<u>신대34</u>	<u>제1반</u>	<u>1004동</u>
								<u>제2반</u>	<u>1005동</u>
						⋮	⋮		⋮
⋮					⋮				
[별표 2]					[별표 2]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삼산동	9	2	용당동 212-1, 253, 348-1~348-10, 351~380-3, 381-391, 401, 402, 544-4, 544-5, 544-15, 558~562-2, 640		삼산동	9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u>	<u>441, 442, 442-8, 444, 444-11, 444-17, 557, 733-34</u>	
⋮	⋮	⋮	⋮		⋮	⋮	⋮	⋮	
⋮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3조
 - 이·통·반장 임명(2개 리, 6개 반)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원활한 이·통·반 관리를 위한 이·통·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통반장 증감 현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비고
이통장	855	857	2	
반 장	2,351	2,357	6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40,300	-1,660	-9,660	-9,660	-9,660	-9,660
세입(a)						
세출(b)	40,300	1,660	9,660	9,660	9,660	9,66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40,300	1,660	9,660	9,660	9,660	9,660
국 비						
도 비						
시 비	40,300	1,660	9,660	9,660	9,660	9,66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9,660천 원/연간 (이장 2명, 반장 6명)
- 산출기초
 - 이장 기본수당 : 300,000원×12월×2명=7,200,000원
 - 이장 상여금 : 300,000원×2회(설, 추석)×2명=1,200,000원
 - 이장 회의참석 수당 : 20,000원×2회(월)×12월×2명=960,000원
 - 반장 수당 : 25,000원×2회(설, 추석)×6명=30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혁신과 과장 백운석(☎749-5453)
자치행정팀장 김종환(☎749-562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2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1. 16.

1. 개정이유

-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통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내용 정비

2.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확대 및 차등 지원(안 제7조제1항)
- 다자녀 가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확대 및 차등 지원(안 제7조제3항)
- 다자녀 출산 축하선물 ‘순천사랑 상품권’ 지원(안 제7조제4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제1항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0. 15. ~ 11. 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0. 13.(여성가족과-2108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9. 27.(보건사업과-14562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0. 14.(기획예산실-1413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0. 15.(순천시 보건소 공고 제2020-18호)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이 경우 부와 모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자녀도 자녀의 수에 포함한다” 를 삭제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로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일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대상이 된다.

제6조제2항제2호의 “제1호의 사유로” 를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7조제4항에 따른 다자녀 출산축하선물의 지급대상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제6조의3 출생 순위에 따른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모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출생 순위) ①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녀를 출생 순위에 포함한다.

1.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
2.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 3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40만원씩 5년간 지급)
 2. 둘째 자녀 : 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80만원씩 5년간 지급)
 3. 셋째 자녀 : 7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20만원씩 5년간 지급)
 4. 넷째 자녀 : 1,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80만원씩 5년간 지급)
 5. 다섯째 자녀 이상 : 1,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280만원씩 5년간 지급)

제7조제3항 본문 단서 중 “제19호는 출생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할 수 있고”를 “제19호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19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둘째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2년간 월 100리터
- 나. 셋째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월 100리터
- 다. 넷째 자녀 이상이 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월 100리터

제7조제3항에 제21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22.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면제
23.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이용 편의
24.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
25.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면제
26.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비용 면제

27.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연회비 면제
28.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연회비 면제
29.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
30.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강료 면제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다자녀 출산축하선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둘째 자녀 : 20만원 상당
2. 셋째 자녀 : 30만원 상당
3. 넷째 자녀 이상 : 50만원 상당

제9조제1항 중 “출생신고를 할 때”를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예금통장사본 1부
3.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이 경우 3개월마다 분할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출산장려금 환수 및 중단)”을 “(출산장려금 등 환수 및 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순천아이 꿈 통장”을 “출산장려금”으로 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다자녀 출산 축하선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부모 또는 영유아가 전출한 경우
2. 지급기간 중 부모 또는 영유아가 타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제12조 중 “순천아이 꿈 통장”을 “출산장려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2자녀 이상 다자녀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제7조제3항제21호부터 제30호까지는 예외로 한다.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 중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 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	☐ 출산장려금 지원 ※ 만 5세까지 매년 신청		☐ () 자녀 중 () 째			
	☐ 신생아 양육비(1회)					
	☐ 출산축하선물 「순천로컬푸드 상품권」 (1회)					
	다자녀 가정 지원		2자녀	3자녀	4자녀 이상	비고
	한방첩약 지원(1회)		☐	☐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순천사랑상품권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2년 ☐	3년 ☐	5년 ☐		
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13년)		☐	☐	☐		
		세대증 실수령지)				

공통 서비스	출생자 성명	신청 내용	
☐ 양육수당 지원	※ 출생자 모두 기재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 아동수당 지원		☐ 아동수당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가의료수급자 대상)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전기요금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 다자녀(3명 이상)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지역난방요금 경감		☐ 지역난방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원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
처리자	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신생아 양육비,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산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 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여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 하

출산장려금은 매년 생일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도 안내 없음에 주의바랍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대리신청인)	→	접 수 읍·면·동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다자녀가정 세대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예시)

← 세 대 증 →

8.7cm

↑

5.5
cm

↓

No. 00-000

사 진

4cm

3cm

다자녀가정 세대증

세대주 성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0000.00.00.

주 소 : 전남 순천시 00로(길)00

유효기간 : 2000.00.00~2000.00.00

20 . 0. 0.

순천시장 (직인)

○ 세대원 현황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대상자에 한함)

세대주와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주소변경사항

주 소 변 경	확인일자

△ 전 면 ∇

△ 후 면 ∇

※ 비 고

1. 기재사항

- No. : 세대증 발행번호(예: 순천시 20-01)
- 사 진 : 3cm × 4cm
- 성 명 : ○ ○ ○
- 생년월일, 주소
- 유효기간 : 2자녀 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13년 간

2. 재질은 플라스틱 카드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

(단위: 원)

연 번	주소	읍면동	보호자 (부모는모)			신 생 아		자녀 수	거주기간	신청일	은행	예금주	입금계좌	지급 금액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전화번호	성 명	생년 월일								
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둘째 이상 자녀”란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형제·자매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말한다. <u>이 경우 부와 모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자녀도 자녀의 수에 포함한다.</u>) 4. “순천아이 꿈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이란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청인이 출생아의 명의로 개설한 적금통장을 말한다. 5. (생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u><삭 제></u> <u><삭 제></u> 5. (현행과 같음)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 부모의 주민등록이 관내에 출생시점 이전부터 6개월 이상 되어 있는 가구로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대상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로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일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대상

현행	개정안
<u>으로 한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u>제1호의 사유로</u>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생략) <u><신설></u>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u>이 된다.</u>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u>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u> ----- ----- ----- 3. (현행과 같음) 4. <u>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외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7조제4항에 따른 다자녀 출산축하선물의 지급대상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제6조의3 출생 순위에 따른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모로 한다.</u> <u>제6조의3(출생 순위) ①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u>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u>

현행	개정안
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① <u>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에 대해 만 0세부터 4세까지 매월 5만원씩 최대 60개월 동안 통장으로 지급한다. 다만, 적금통장에 시 지원금 외에 추가로 본인부담금을 희망하는 경우는 금액을 자유로 넣을 수 있다.</u>	<u>호의 자녀를 출생 순위에 포함한다.</u> <u>1.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u> <u>2.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u> 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① <u>시장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1. 첫째 자녀 : 3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40만원씩 5년간 지급)</u> <u>2. 둘째 자녀 : 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80만원씩 5년간 지급)</u> <u>3. 셋째 자녀 : 7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20만원씩 5년간 지급)</u> <u>4. 넷째 자녀 : 1,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80만원씩 5년간 지급)</u> <u>5. 다섯째 자녀 이상 : 1,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280만원씩 5년간 지급)</u>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시장은 2자녀 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1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문화·복지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u>제19호는 출생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할 수 있고, 제20호는 출생한 날로부터 1년간 면제할 수 있다.</u> 1. ~ 9. (생략) 10. 「<u>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3조에 따른 <u>사용료 감면</u> 11. (생략) 12. 「<u>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4조제2호에 따른 <u>사용료 감면</u> 13. ~ 18. (생략) 19. 세대당 매월 100리터 이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u><신설></u> <u><신설></u> <u><신설></u> 20.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19호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고, ----- -----. 1. ~ 9. (현행과 같음) <u><삭제></u> 11. (현행과 같음) <u><삭제></u> 13. ~ 18. (현행과 같음) 19. ----- ----- <u>가. 둘째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2년간 월 100리터</u> <u>나. 셋째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월 100리터</u> <u>다. 넷째 자녀 이상이 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월 100리터</u> 20. (현행과 같음) 21. 「<u>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u>」 제8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현행	개정안
<신설>	22.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면제
<신설>	23.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이용 편의
<신설>	24.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신설>	25.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면제
<신설>	26.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비용 면제
<신설>	27.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연회비 면제
<신설>	28.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연회비 면제
<신설>	29.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
<신설>	30.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강료 면제
<신설>	④ 시장은 다자녀 출산축하선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현행	개정안
제9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① 제7조의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u>출생신고를 할 때</u>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에게 <u>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생략) 제10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절차) ① (생략) ② <u>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통장을 개설하여 그 사본을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	<u>위에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u> <u>1. 둘째 자녀 : 20만원 상당</u> <u>2. 셋째 자녀 : 30만원 상당</u> <u>3. 넷째 자녀 이상 : 50만원 상당</u> 제9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① ----- ----- ----- <u>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u> ----- ----- <u>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u>1.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u> <u>2. 예금통장사본 1부</u> <u>3.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u>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절차) ① (현행과 동일) <u><삭 제></u> ③ (현행과 동일) ④ ----- -----

현행	개정안
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3개월마다 분할 지급할 수 있다.</u>	----- ----- -----, <삭 제>
제11조(출산장려금 환수 및 중단) ① <u>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u> ② <u>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통장해지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그 사유 발생일이 해당 월의 16일 이후면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u>순천아이 꿈 통장</u> 지급대장 비고란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출산장려금 등 환수 및 중단) ① <u>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u> ② <u>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u> 1. <u>부모 또는 영유아가 전출한 경우</u> 2. <u>지급기간 중 부모 또는 영유아가 타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u> 3. <u>영유아가 사망한 경우</u> ③ ----- ----- ----- 출산장려금 ----- ----- -----.
제12조(출산장려금 대장비치) 시장	제12조(출산장려금 대장비치) ----

현행	개정안
과 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u>순천아이 꿈 통장</u>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 ----- <u>출산장려금</u> ----- -----.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illegible][illegible]

100

[illegible][illegible]

현행

[별지 제2호 서식]

다자녀가정 세대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예시)

세대증		8.7cm	
5.8cm	3cm	No. 00-000 다자녀가정 세대증 세대주 성명 : 홍길동 생년월일 : 0000.00.00. 주 소 : 전남 순천시 00로(길)00 유효기간 : 2000.00.00-2000.00.00 20 . 0. 0. 순천시청 [직인]	
		A 전 면 V A 후 면 V	
○ 세대증 현황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대상자에 한함)			
세대주(과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 주소변경사항			
주 소 변 경		확인일자	

※ 비 고

1. 기재사항

- No. : 세대증 발행번호(예: 순천시 20-01)
- 사 진 : 3cm × 4cm
- 성 명 : ○ ○ ○
- 생년월일, 주소
- 유효기간 : 2자녀 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13년 간

2. 재질은 플라스틱 카드

3. 색상은 흰색바탕으로 한다.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다자녀가정 세대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예시)

세대증		8.7cm	
5.8cm	4cm	No. 00-000 다자녀가정 세대증 세대주 성명 : 홍길동 생년월일 : 0000.00.00. 주 소 : 전남 순천시 00로(길)00 유효기간 : 2000.00.00-2000.00.00 20 . 0. 0. 순천시청 [직인]	
		A 전 면 V A 후 면 V	
○ 세대증 현황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대상자에 한함)			
세대주(과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 주소변경사항			
주 소 변 경		확인일자	

※ 비 고

1. 기재사항

- No. : 세대증 발행번호(예: 순천시 20-01)
- 사 진 : 3cm × 4cm
- 성 명 : ○ ○ ○
- 생년월일, 주소
- 유효기간 : 2자녀 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13년 간

2. 재질은 플라스틱 카드

3. 색상은 흰색바탕으로 한다(삭제)

현행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12.26.>

순천아이 꿈 통장 지급 대장

(단위: 원)

[illegible]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

(단위: 원)

[illegible]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기존 출산장려금「순천아이 꿈 통장」지원>

- 관련조례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시작 : 2017. 7. 1. ~
- 지원대상 : 2017. 7. 1.이후 출생아
- 지원기간 : 만 0세~ 만 4세
- 지원금액 : 1인 최대 300만원(월 5만원*60개월 적금)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예산액	지급인원	지급액	비 고
2017년	330,000	609	134,100	‘17.7.1.부터 지급
2018년	1,060,000	2,219	1,050,250	
2019년	2,017,600	3,755	2,017,600	
2020년	2,919,000	4,622	1,864,700	‘20.9.20.기준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①항 시장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 3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40만원씩 5년간 지급)
 2. 둘째 자녀 : 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80만원씩 5년간 지급)
 3. 셋째 자녀 : 7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20만원씩 5년간 지급)
 4. 넷째 자녀 : 1,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80만원씩 5년간 지급)
 5. 다섯째 자녀 이상 : 1,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280만원씩 5년간 지급)
- 제④항 시장은 다자녀 출산축하선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둘째 자녀 : 20만원 상당
 2. 셋째 자녀 : 30만원 상당
 3. 넷째 자녀 이상 : 50만원 상당
- 제③항제19호 : 세대당 매월 100리터 이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가. 둘째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2년간 월 100리터
 - 나. 셋째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월 100리터
 - 다. 넷째 자녀 이상이 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월 100리터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금·다자녀 출산축하선물·다자녀가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출(b)	33,168	5,234	6,398	7,052	7,196	7,28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비	33,168	5,234	6,398	7,052	7,196	7,288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기 간 : 2021. 1. 1. 이후
- 대 상 : 2021. 1. 1. 이후 출생아, 만 0세 ~ 만 5세
- 지급액 : 1인당 최대 300 ~ 1,500만원지급 ※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이후
시비	5,234	6,398	7,052	7,196	7,288	7,670

○ 산출내역

● 2021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누계	5,234		
기존(꿈통장)	3,165	50천원×5,275명(기존대상)×12개월	
신규(일시금)	1,850	1,000천원×1,850(신규출생)×1회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순천사랑상품권)	197	- 순천사랑상품권 200천원×675명(둘째아) - 순천사랑상품권 300천원×163명(셋째아) - 순천사랑상품권 500천원×27명(넷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	22	450원×5매×12월×817세대(2자녀 이상)	

● 2022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누계	6,398		
기존(꿈통장)	3,165	50천원×5,275명(기존대상)×12개월	
신규(일시금)	1,850	1,000천원×1,850(신규출생)×1회	
신규(분할지급)	1,164	- 400천원×930명(첫째아)×1회 - 800천원×675명(둘째아)×1회 - 1,200천원×163명(셋째아)×1회 - 1,800천원×19명(넷째아)×1회 - 2,800천원×8명(다섯째아 이상)×1회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순천사랑상품권)	197	- 순천사랑상품권 200천원×675명(둘째아) - 순천사랑상품권 300천원×163명(셋째아) - 순천사랑상품권 500천원×27명(넷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	22	450원×5매×12월×817세대(2자녀 이상)	

• 2023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누계	7,052		
기존(꿈통장)	2,145	50천원×3,575명(기존대상)×12개월	
	510	50천원×1,700명(적금만기)×6개월	
신규(일시금)	1,850	1,000천원×1,850(신규출생)×1회	
신규(분할지급)	2,328	- 400천원×930명(첫째아)×1회×2년 - 800천원×675명(둘째아)×1회×2년 - 1,200천원×163명(셋째아)×1회×2년 - 1,800천원×19명(넷째아)×1회×2년 - 2,800천원×8명(다섯째아 이상)×1회×2년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순천사랑상품권)	197	- 순천사랑상품권 200천원×675명(둘째아) - 순천사랑상품권 300천원×163명(셋째아) - 순천사랑상품권 500천원×27명(넷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	22	450원×5매×12월×817세대(2자녀 이상)	

• 2024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누계	7,196		
기존(꿈통장)	1,125	50천원×1,875명(기존대상)×12개월	
	510	50천원×1,700명(적금만기)×6개월	
신규(일시금)	1,850	1,000천원×1,850(신규출생)×1회	
신규(분할지급)	3,492	- 400천원×930명(첫째아)×1회×3년 - 800천원×675명(둘째아)×1회×3년 - 1,200천원×163명(셋째아)×1회×3년 - 1,800천원×19명(넷째아)×1회×3년 - 2,800천원×8명(다섯째아 이상)×1회×3년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순천사랑상품권)	197	- 순천사랑상품권 200천원×675명(둘째아) - 순천사랑상품권 300천원×163명(셋째아) - 순천사랑상품권 500천원×27명(넷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	22	450원×5매×12월×817세대(2자녀 이상)	

• 2025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누계	7,288		
기존(꿈통장)	562.5	50천원×1,875명(적금만기)×6개월	
신규(일시금)	1,850	1,000천원×1,850(신규출생)×1회	
신규(분할지급)	4,656	- 400천원×930명(첫째아)×1회×4년 - 800천원×675명(둘째아)×1회×4년 - 1,200천원×163명(셋째아)×1회×4년 - 1,800천원×19명(넷째아)×1회×4년 - 2,800천원×8명(다섯째아 이상)×1회×4년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순천사랑상품권)	197	- 순천사랑상품권 200천원×675명(둘째아) - 순천사랑상품권 300천원×163명(셋째아) - 순천사랑상품권 500천원×27명(넷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	22	450원×5매×12월×817세대(2자녀 이상)	

※ 순천시 출생아수 : 16년(1,961명), 17년(1,852명), 18년(1,722명), 19년(1,792명)

6. 협의사항

○ 지역경제과 : 순천사랑 상품권 구입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순천시보건소 보건사업과 과장 남양우(☎749-6468)
 담당 정영희(☎749-6896)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제3339호
--------------	--------

발의연월일 : 2020. 11. 19.

발 의 자 : 이현재 의원
박혜정 의원
박종호 의원
장숙희 의원
김영진 의원

1. 개정이유

-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미비된 관련 근거 조항을 조례에 담아 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설치(제17조), 위탁운영(제18조), 지도·감독 및 보고(제19조) 신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제1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기업 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유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4. 우선구매 촉진 홍보
5.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감독 및 보고)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상황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 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⑥ 시장은 센터 운영 상황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17조(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기업 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유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4. 우선구매 촉진 홍보 5.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감독 및 보고)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상황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27조 (현행 제17조~제24조와 같음)
제17조~제24조 (생략)	제20조~제27조 (현행 제17조~제24조와 같음)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시행일 : 2020.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6.10>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 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06.30>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전라남도나 순천시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전라남도나 순천시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 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

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6.30>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임원 <신설 2020.06.30>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활동가 <제2호에서 이동 2020.06.30>

4. 윤리적 소비자 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제3호에서 이동 2020.06.30>

5.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2명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06.30>

6. 시 공무원 <제5호에서 이동 2020.06.30>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제6호에서 이동 2020.06.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 훈련·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 특화 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 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활성화 지원) 시장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굴·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예비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지원) ① 시장은 예비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천형 마을기업 등 예비 사회적경제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예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등에 따른다.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

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육성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간 및 민간네트워크의 협력 지원
4.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경영등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 홍보 지원

7.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8. 그 밖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③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 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07.31>

⑥ 시장은 센터 운영 상황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6.10]

제17조(경영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1항의 지원금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시장은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 사회와 연대, 지역 사회 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설비 등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0조(우선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총구매액의 5%이상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0>

② 시장은 우선 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감면) 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4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제2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순천시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천시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 기업 지원 확대

제23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 경영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 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40호
----------	--------

발의연월일 : 2020. 11. 19.

발 의 자 : 나안수 의원
남정옥 의원
김미애 의원
문규준 의원
오광묵 의원
박해정 의원
이현재 의원
박종호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책무. (안 제3조)
- 다른법령과의 관계. (안 제4조)
- 보조금 등 지원. (안 제5조)
- 사무의 검사 및 감독. (안 제6조)
- 문화사업 등의 위탁. (안 제7조)
- 준용. (안 제8조)
- 시행규칙.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나.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다. 타 지자체 입법례 : 전국 213개 지자체(전남 : 13)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순천시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천시 문화원” (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 교육 사업
7.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2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1. 16.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 규정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9조제5항제5호~12호)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0. 5. ~ 10. 2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09. 28.(여성가족과-20161)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09. 25.(기획예산실-13297)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0. 5.(순천시 공고 제2020-2048호)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00분의 50 감면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
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50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 ④ (생략)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획 공연 및 전시할 때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 100분의 50 감면	5.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100분의 50 감면
6.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100분의 50 감면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신 설>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신 설>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신 설>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신 설>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현행	개정안
<신설>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신설>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4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50 감면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2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1. 16.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 규정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 입장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16조의3제5호~12호)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0. 5. ~ 10. 2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09. 28.(여성가족과-20161)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09. 25.(기획예산실-13297)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0. 5.(순천시 공고 제2020-2048호)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00분의 50 감면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 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50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3(입장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3(입장료의 감면)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 100분의 50 감면	5.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100분의 50 감면
6.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100분의 50 감면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신 설>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신 설>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신 설>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신 설>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신 설>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u> <u>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u> <u>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u> <u>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u> <u>한 법률」 제15조의 4에 따른 등록포</u> <u>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u> <u>출신 포로가족은 100분의 50 감면</u>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2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1. 16.

1. 개정이유

- 신설 체육시설 이관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 상급기관의 조례정비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사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준 권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면적, 규모 일치(안 제3조 별표 1)
- 신설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사용료(이용료) 규정 (안 제3조 별표 1, 제10조 별표 2)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구체화(안 제11조)
-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0. 6. ~ 10. 26.)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9. 14.(여성가족과-1888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9. 15.(기획예산실-1261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0. 5.(순천시 공고 제2020-2049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람
4.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대표로 등록된 선수의 훈련
3. 전국·도·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6.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천연잔디구장은 제외한다.
7.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1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2.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 학습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13.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

14. 축구장의 조간사용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10.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1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3.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임여성

14. 수영·배드민턴 일일이용 어린이, 청소년 단체입장

15.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학습 프로그램운영
 16. 장기 이용회원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요율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함께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위약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 가. 사용개시 5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및 순천사랑상품권 5천원
 - 나. 사용개시 2~4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및 순천사랑상품권 10천원
 - 다. 사용개시 1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및 순천사랑상품권 15천원
 2. 사용예정자 또는 사용·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가. 사용개시 7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 나. 사용개시 5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다. 프로그램 최초 이용 예정일 전 취소 : 이용료 전액
 - 라. 프로그램 이용 중 취소 :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규 모			
			부지면적	경기장 면 적	건 물 연면적	주요시설
팔마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팔마로 333 (연향동)	31,470㎡	21,490㎡	5,659㎡	천연잔디구장 1면, 트랙 400m/8레인 좌석수 12,703석
	보조경기장		23,160㎡	15,259㎡	-	인조잔디 1면, 트랙 400m/4레인 좌석수 204석
	다목적체육관		740㎡	364㎡	522.36㎡	복상장 1층, 유도장 2층
	양궁장		3,846㎡	1,653㎡	312.54㎡	좌석수 8석
	팔마소프트테니스장		7,509㎡	4,600㎡	252.72㎡	클레이코트 6면, 좌석수 670석
	팔마테니스장		12,000㎡	7,330㎡	191.34㎡	하드코트 10면, 조명시설 좌석수 392석
생활체 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소프트테니스장		12,482㎡	6,375㎡	6,594㎡	하드코트 8면, 조명시설
	게이트볼		2,706㎡	2,706㎡	1,171.25㎡	인조잔디 2면
	족구장		3,439㎡	3,439㎡	-	인조구장 5면, 조명시설
	씨름장		1,050㎡	411.06㎡	86.64㎡	씨름장, 사무실
팔마국궁장			6,395㎡	5,049㎡	484.94㎡	사대수 28개
팔마인공암벽장			1,610㎡	-	212.4㎡	암벽장 1동(높이 19.35m)
팔마야구장			24,073㎡	13,000㎡	992.45㎡	인조잔디 1면
팔마실내야구연습장				-	630㎡	실내야구연습장 1면
팔마유소년축구장			12,780㎡	12,150㎡	302.4㎡	인조잔디 2면, 관람석 78석
팔마장애인 론볼구장			3,276㎡	1,800㎡	118.8㎡	9링크(50*56m)
팔마 X-게임장			406㎡	406㎡	-	X-게임장 1면
팔마체육관			14,010㎡	1,608㎡	6,483.18㎡	좌석수 3,576석, 전광판, 음향시설, 기계실, 부속실 16개소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12,539㎡	1,260㎡	7,254㎡	수영장 25m/7레인, 체력단련실, 탁구장, 에어로빅실, 기계실, 체육관, 배드민턴장 6면, 교육장, 사무실
팔마골프연습장			3,907㎡	3,003.04㎡	903.96㎡	26타석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환선로 133 (석현동)	10,678㎡	843.48㎡	3,549.63㎡	수영장 25m/6레인, 체력단련실, 사무실, 기계실
상사경기장		상사초등길 34	23,481㎡	11,282㎡	-	인조잔디 1면, 풋살장 3면 좌석수 444석
조곡생활체육공원		자경1길 6 (조곡동)	17,931㎡	8,114㎡	353㎡	관리사/축구장 1면 시각장애인축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다목적경기장 1면
상사호야구장		상사면 구계길 54	46,390㎡	12,816㎡	-	제1구장 4,910㎡ 1면(리틀) 제2구장 7,906㎡ 1면(성인)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연향동 814-25	51,754㎡	29,795㎡	43㎡	축구장2면, 풋살장2면, 인라인장1면, 주차장 1식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제10조 관련)

가. 시설물 사용료

○ 전용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팔마주경기장육상트랙	주간 1일	34,000	54,000	108,000	162,000
팔마주경기장 필드	주간 1회 3시간	150,000	200,000	300,000	400,000
팔마보조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0,000	40,000	70,000	100,000
팔마보조경기장필드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야간 전기사용료	"	60,000	6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야간 전기사용료	"	60,000	6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풋살장	1회 3시간	30,000	50,000	-	-
야간 전기사용료	"	30,000	30,000		
상사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상사풋살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조곡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조곡생활체육공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팔마체육관	주간	50,000	80,000	140,000	210,000
	야간	75,000	120,000	200,000	300,000
팔마소프트테니스장 팔마테니스장 (1 코트 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다목적체육관	주간	20,000	27,000	-	-
	야간	31,000	41,000	-	-
팔마양궁장	주간 1일	20,000	30,000	-	-
팔마족구장 (1 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상사호야구장	주간 1회 3시간	20,000	40,000	70,000	100,000
팔마국궁장	3시 간	20,000	30,000	-	-
팔마인공암벽장	주간 1회 1시간	10,000	15,000	-	-
팔마야구장	주 간 1회 3시 간	60,000	80,000	100,000	140,000
팔마실내야구연습장	주 간 1회 2시 간	20,000	30,000	-	-
팔마유소년축구장	주 간 1회 3시 간	40,000	60,000	100,000	150,000
팔마장애인론볼구장	주 간	20,000	30,000	-	-

※ 주경기장 필드는 1일 1회 초과 사용 불가

※ 조곡시각장애인축구장은 시각장애인 외의 사용자에게 해당

※ 유소년축구장을 일반축구장으로 사용 시 팔마보조경기장과 동일하게 사용료 적용

※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일반인		학생 · 군인 · 단체		어린이		65세 이상	
				1회사용	월회원	1회사용	월회원	1회사용	월회원	1회사용	월회원
팔마체육관	1회2시간				30,000		20,000		14,000		9,000
팔마소프트 테니스장 팔마테니스장	1회 2시간	조명 등	미 사용	1,500	20,000	1,000	15,000	700	11,000	450	6,000
			사 용	2,000	30,000	1,500	20,000	1,000	20,000	600	9,000
팔마골프연습장	자 유			10,000	120,000	10,000	120,000	10,000	120,000	3,000	36,000
다목적체육관	1회2시간			1,000	20,000	700	14,000	500	11,000	300	6,000
팔마양궁장	1회2시간			2,000	40,000	1,500	30,000	1,000	20,000	600	12,000
팔마족구장	1회 2시간	조명 등	미 사용	1,500	20,000	1,000	15,000	700	11,000	450	6,000
			사 용	2,000	30,000	1,500	20,000	1,000	20,000	600	9,000
팔마국궁장	1회2시간			1,500	30,000	1,200	24,000	-	-	-	-
팔마인공암벽장	1회2시간			2,500	50,000	2,000	40,000	1,700	34,000	-	-

○ 교육장

용 도	기 준	사 용 료
교 육	1시간	20,000원

○ 상업사용료(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고
1.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한 영화 촬영	○주간 27,000 ○야간 54,000			
2. 애드벌룬 및 이와 유사한 선전 광고행위	○1개 1일간 5,500 (단,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3. 팸플릿 프로그램 판매	○ 판매부수 1매당 가격 - 총판매금액 20/100징수			
4. 게시부착 광고물	기 준	사 용 료		
	10m ²	• 5일 이내 50,000 - 1일 초과 5,000		
5. 진열 · 전람광고물	기 준	사 용 료		
		주 경 기 장		
	3m ² 이내	중 계 방송시	중 계 방송외	기 타
		100,000	50,000	30,000
	3m ² 이상 6m ² 이내	150,000	100,000	50,000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종 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방 송 시 설 (앰프 및 마이크 등)	교육장 · 소프트웨어 테니스장	1일1회	14,000	
	기타시설	"	40,000	
전 광 판		"	기본료(40,000) · 월기본요금/30 · 실제사용료	스코어판 포함
일반전기 (조명)	기 념 관	"	기본료+실제사용한전기료+부가세	무대조명시 기타시설 사용료 적용 -기본료:월기본료×1/30×사용일 -실제사용한전기료:전기사용량×요금단가
	기 타 시 설	"	기본료+실제사용한전기료+부가세	-기본료:월기본료×1/30×사용일 -실제사용한전기료:전기사용량×요금단가
냉 · 난방	기 념 관	"	· 냉방 - 기본료(20,000)+실제전기사용 요금+부가세	
	팔 마 체 육 관	"	· 난방 - 기본료(20,000)+실제유류사용 요금+부가세	
라 이 트		"	- 기본료+실제사용한전기료+부가세	
운 동 기 구		"	14,000	배구, 배드민턴 네트 및 지주대 세트
공 공 용 지		3.3㎡당	7,000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단 1회 사용은 10일 이내로 하며 초과분에 한하여 1일 10% 추가징수)

다. 프로그램 이용료

프 로 그 램		기 준	이용료(강습)	자유이용	일일이용	비 고
수영	일 반	1개월	66,000원(월, 수, 금)	54,000원	3,000원	
			62,000원(화, 목)			
	청소년, 군인	1개월	52,000원(월, 수, 금)	40,000원	2,000원	
			48,000원(화, 목)			
	어 린 이	1개월	42,000원(월, 수, 금)	30,000원	1,500원	
			38,000원(화, 목)			
경 로	1개월	해당없음	15,000원	1,500원		
에 어 로 빅		1개월	5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요가		1개월	5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아쿠아로빅		1개월	66,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어린이축구		1개월	40,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복싱	일 반	1개월	50,000원	20,000원	해당없음	
	청소년, 군인	1개월	45,000원	14,000원	해당없음	
	어 린 이	1개월	40,000원	11,000원	해당없음	
유도	일 반	1개월	50,000원	20,000원	해당없음	
	청 소 년	1개월	45,000원	14,000원	해당없음	
	어 린 이	1개월	40,000원	11,000원	해당없음	
배 드 턴	일 반 인	1개월	45,000원	30,000원	1,500원	
	청소년, 군인	1개월	40,000원	20,000원	1,000원	
	어 린 이	1개월	34,000원	14,000원	700원	
체력 단련실	일반, 청소년	1개월	해당없음	30,000원	2,000원	문화건 강센터
비고						
1. 유아는 어깨 높이 90cm 이상 수영장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어린이에 준한다.						
2. 시설이용권은 1일 1회 사용으로 한다.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사 용 료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2. 시대표로 등록된 <u>선수의 훈련</u>	80%	
	3. 전국·도·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순천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80%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u>100%</u>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80%	
	6.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0%	천연잔디 구장은 제외
	7.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0%	
	8.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	80%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1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u>12.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 학습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u>	<u>50%</u>	
	<u>13.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u>	50%	
	<u>14. 축구장의 조간사용</u>	50%	천연잔디구장, 토·일 공휴일 제외
이 용 료	<u>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50%	
	<u>1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u>	50%	
	<u>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u>	50%	
	<u>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50%	
	<u>1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50%	
	<u>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u>	50%	
	<u>2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50%	
	<u>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u>	50%	
	<u>2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u>	50%	장애인등록증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u>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u>		소지자
24.	<u>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u>	50%	
25.	<u>「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u>	50%	
26.	<u>「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u>	50%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자
		10%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희망자
27.	<u>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입여성</u>	10%	수영장 월 이용자에 한정하여 감면 하거나 5일 연장
28.	<u>수영·배드민턴 일일이용 어린이, 청소년 단체입장</u>	30%	
29.	<u>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학습 프로그램운영</u>	50%	협조 공문 제시
30.	<u>장기 이용회원</u>	15%	3개월
		20%	6개월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 이용료 감면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적용한다.(단, 15호 ~ 24호, 30호는 제외)

※ 단 25호는 2020. 7. 1.이후 출생한 둘째자녀를 둔 사람부터 적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입장금지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시설에 입장할 수 없고, 이미 입장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술에 만취된 사람 3. (생략) <u><신 설></u> <u><신 설></u> 4. (생략)	제8조(입장금지 및 퇴장) ----- ----- ----- -----. 1. (현행과 같음) 2.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현행과 같음) 4.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대표로 등록된 선수훈련 3. 전국·도·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6.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 ----- ----- <u>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 1. (현행과 같음) 2. ----- <u>선수의 훈련</u> 3. ~ 1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천연잔디구장은 제외한다. 7.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1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2.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 학습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u>〈신 설〉</u> <u>〈신 설〉</u> <u>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감면요율은 별표 3과 같다.</u>	<u>13.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u> <u>14. 축구장의 조건사용</u> <u>15. (현행 제13호와 같음)</u> <u>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u>〈신 설〉</u>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u>〈신 설〉</u>	10.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1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1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3.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임여성 14. 수영·배드민턴 일일이용 어린이, 청소년 단체입장 15.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학습 프로그램운영 16. 장기 이용회원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요율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사용개시 10일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과 우천 및 시설물의 중대한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개시 5일 전에 취소한 경우 : 100분의 80 4. 프로그램 이용자가 이용 중 취소한 경우 :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함께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배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가. 사용개시 5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및 순천사랑상품권 5천원

현행	개정안
5. 프로그램 이용자가 최초 이용예정일 전에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나. 사용개시 2~4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및 순천사랑상품권 10천원 다. 사용개시 1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및 순천사랑상품권 15천원 2. 사용예정자 또는 사용·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가. 사용개시 7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5일전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80 다. 프로그램 최초 이용 예정일 전 취소 : 이용료 전액 라. 프로그램 이용 중 취소 :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치	규모							
		부지면적	경기장면적	건물연면적	주요시설				
팔마종합운동장	주경기장	70,142㎡	21,490㎡	5,659㎡	천연잔디구장 1면, 트랙 400m/8레인 좌석수 12,708석				
	보조경기장	23,000㎡	15,259㎡	-	인조잔디 1면, 트랙 400m/4레인 좌석수 204석				
	다목적체육관	2,979㎡	364㎡	522.36㎡	복합장 1층, 유도장 2층				
	양궁장	1,653㎡	1,653㎡	89.7㎡	좌석수 8석				
	팔마정구장	8,100㎡	4,600㎡	267㎡	클레이코트 6면, 좌석수 670석				
	팔마테니스장	14,857㎡	7,330㎡	163㎡	하드코트 10면, 조명시설 좌석수 392석				
생활체육공원	정구장	4,154㎡	4,154㎡	-	클레이코트 3면, 조명시설				
	테니스장	8,328㎡	8,328㎡	-	클레이코트 6면, 조명시설				
	게이트볼	2,706㎡	2,706㎡	1,171.25㎡	인조잔디 2면				
	족구장	3,439㎡	3,439㎡	-	인조구장 5면, 조명시설				
	팔마로 333 (연향동)	〈신설〉							
		〈신설〉							
팔마체육관		23,728㎡	1,608㎡	6,482㎡	좌석수 3,576석, 전광판, 음향시설, 기계실, 부속실 16개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2,539㎡	1,260㎡	7,254㎡	수영장 25m/7레인, 체력단련실, 탁구장, 에어로빅실, 기계실, 체육관, 배드민턴장 6면, 교육장, 사무실				
팔마골프연습장		8,145㎡	6,759㎡	904㎡	26타석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환선로 133 (석현동)	10,678㎡	3,549㎡	1,690㎡	수영장 25m/6레인, 체력단련실, 사무실, 기계실			
상사경기장	상사초 등길 34	23,481㎡	11,282㎡	-	인조잔디 1면, 풋살장 3면, 좌석수 444석				
조곡생활체육공원	자경1길 6 (조곡동)	17,931㎡	8,114㎡	353㎡	관리사/축구장 1면, 시각장애인축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다목적경기장 1면				
상사호야구장	상사면 구계길 54	46,390㎡	12,816㎡	-	제1구장 4,910㎡ 1면(리틀), 제2구장 7,906㎡ 1면(성인)				
국가정원스포츠센터	연향동 812-23	72,393㎡	29,795㎡	43㎡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인라인장 1면, 주차장 1식				

명칭	위치	규모			
		부지면적	경기장면적	건물연면적	주요시설
팔마종합운동장	주경기장	31,470㎡	21,490㎡	5,659㎡	천연잔디구장 1면, 트랙 400m/8레인 좌석수 12,708석
	보조경기장	23,160㎡	15,259㎡	-	인조잔디 1면, 트랙 400m/4레인 좌석수 204석
	다목적체육관	740㎡	364㎡	522.36㎡	복합장 1층, 유도장 2층
	양궁장	3,846㎡	1,653㎡	312.54㎡	좌석수 8석
	팔마소프트테니스장	7,509㎡	4,600㎡	252.72㎡	클레이코트 6면, 좌석수 670석
	팔마테니스장	12,000㎡	7,330㎡	191.34㎡	하드코트 10면, 조명시설 좌석수 392석
생활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소프트테니스장	12,482㎡	6,375㎡	6,594㎡	하드코트 8면, 조명시설
	게이트볼	2,706㎡	2,706㎡	1,171.25㎡	인조잔디 2면
	족구장	3,439㎡	3,439㎡	-	인조구장 5면, 조명시설
	씨름장	1,050㎡	411.06㎡	497.7㎡	씨름장, 사무실
	팔마국궁장	6,395㎡	5,049㎡	484.94㎡	사대수 28개
	팔마인공암벽장	1,610㎡	-	212.4㎡	암벽장 1동(높이 19.35m)
팔마야구장	24,073㎡	13,000㎡	992.45㎡	인조잔디 1면	
팔마실내야구연습장	-	-	630㎡	실내연습장 1면	
팔마유소년축구장	12,780㎡	12,150㎡	302.4㎡	인조잔디 2면, 관람석 78석	
팔마장애인분류구장	3,276㎡	1,800㎡	118.8㎡	9랑크(50*56m)	
팔마X-게임장	406㎡	406㎡	-	X-게임장 1면	
팔마체육관	팔마로 333 (연향동)	14,010㎡	1,608㎡	6,483.18㎡	좌석수 3,576석, 전광판, 음향시설, 기계실, 부속실 16개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팔마로 333 (연향동)	12,539㎡	1,260㎡	7,254㎡	수영장 25m/7레인, 체력단련실, 탁구장, 에어로빅실, 기계실, 체육관, 배드민턴장 6면, 교육장, 사무실
팔마골프연습장	팔마로 333 (연향동)	3,907㎡	3,003.04㎡	903.96㎡	26타석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환선로 133 (석현동)	10,678㎡	843.48㎡	3,549.63㎡	수영장 25m/6레인, 체력단련실, 사무실, 기계실
상사경기장	상사초 등길 34	23,481㎡	11,282㎡	-	인조잔디 1면, 풋살장 3면, 좌석수 444석
조곡생활체육공원	자경1길 6 (조곡동)	17,931㎡	8,114㎡	353㎡	관리사/축구장 1면, 시각장애인축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다목적경기장 1면
상사호야구장	상사면 구계길 54	46,390㎡	12,816㎡	-	제1구장 4,910㎡ 1면(리틀), 제2구장 7,906㎡ 1면(성인)
국가정원스포츠센터	연향동 814-25	51,754㎡	29,795㎡	43㎡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인라인장 1면, 주차장 1식

현행						개정안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제10조 관련) 가. 시설물 사용료 ○ 전용기본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제10조 관련) 가. 시설물 사용료 ○ 전용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구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4,000	54,000	108,000	162,000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4,000	54,000	108,000	162,000
팔마주경기장 필드	주간 1회 3시간	150,000	200,000	300,000	400,000	팔마주경기장필드	주간 1회 3시간	150,000	200,000	300,000	400,000
팔마보조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0,000	40,000	70,000	100,000	팔마보조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0,000	40,000	70,000	100,000
팔마보조 경기장필드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팔마보조 경기장필드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팔마보조경기장 필드 야간 전기사용료	"	60,000	60,000			팔마보조경기장필드 야간 전기사용료	"	60,000	6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B야간 전기사용료	"	60,000	6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B야간 전기사용료	"	60,000	6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풋살장	1회 3시간	30,000	50,000	-	-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풋살장	1회 3시간	30,000	50,000	-	-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풋살장야간 전기사용료	"	30,000	3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풋살장야간 전기사용료	"	30,000	30,000		
상사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상사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상사풋살 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상사풋살 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조곡생활체육 공원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조곡생활체육 공원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조곡생활체육공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조곡생활체육공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팔마체육관	주간	50,000	80,000	140,000	210,000	팔마체육관	주간	50,000	80,000	140,000	210,000
	야간	75,000	120,000	200,000	300,000		야간	75,000	120,000	200,000	300,000
팔마정구장 팔마테니스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팔마소프트테니스장 팔마테니스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야간	20,000	30,000	-	-
다목적체육관	주간	20,000	27,000	-	-	다목적체육관	주간	20,000	27,000	-	-
	야간	31,000	41,000	-	-		야간	31,000	41,000	-	-
팔마양궁장	주간 1일	20,000	30,000	-	-	팔마양궁장	주간 1일	20,000	30,000	-	-
	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팔마축구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팔마축구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야간	20,000	30,000	-	-
상사호 야구장	주간 1회 4시간	20,000	40,000	-	-	상사호야구장	주간 1회 3시간	20,000	40,000	-	-
							3시간	20,000	30,000	-	-
※ 주경기장 필드는 1일 1회 초과 사용 불가						※ 주경기장 필드는 1일 1회 초과 사용 불가					
※ 보조경기장 필드는 기준 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별로 산출하여 징수한다.						※ 보조경기장 필드는 기준 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별로 산출하여 징수한다.					
※ 조곡시각장애인축구장은 시각장애인 외의 사용자에게 해당						※ 조곡시각장애인축구장은 시각장애인 외의 사용자에게 해당					
						※ 유소년축구장을 일반축구장으로 사용 시 팔마보조경기장과 동일하게 사용료 적용					
						※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현행

○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일반인		학생·군인·단체		어린이		65세 이상	
		1회사용	월회원	1회사용	월회원	1회사용	월회원	1회사용	월회원
팔마체육관	1회2시간		30,000		20,000		14,000		9,000
팔마정구장 팔마테니스장	1회2시간 조명등	미사용	1,500	20,000	1,000	15,000	700	11,000	450
		사용	2,000	30,000	1,500	20,000	1,000	20,000	600
팔마골프연습장	자 유	10,000	120,000	10,000	120,000	10,000	120,000	3,000	36,000
다목적체육관	1회2시간	1,000	20,000	700	14,000	500	11,000	300	6,000
팔마양궁장	1회2시간	2,000	40,000	1,500	30,000	1,000	20,000	600	12,000
팔마족구장	1회2시간 조명등	미사용	1,500	20,000	1,000	15,000	700	11,000	450
		사용	2,000	30,000	1,500	20,000	1,000	20,000	600

○ 교육장

용 도	기 준	사 용 료
교 육	1시간	20,000원

○ 상업사용료(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고
1.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한 영화 촬영	○주간 27,000 ○야간 54,000				
2.	애드벌룬 및 이와 유사한 선전 광고행위	○1개 1일간 5,500 (단, 일출시부터 일몰시 까지)				
3.	팸플릿 프로그램 판매	○ 판매부수 1매당 가격 - 총판매금액 20/100정수				
4.	게시부착 광고물	기준	사 용 료			
		10㎡	• 5일 이내 50,000 - 1일 초과 5,000			
5.	진열 · 전람광고물	기 준	사 용 료			
			주 경 기 장			
			중 계 방송시	중 계 방송외	기 타	
		3㎡이내	100,000	50,000	30,000	1일 1개
		3㎡이상 6㎡이내	150,000	100,000	50,000	1일 1개

개정안

○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일반인		학생·군인·단체		어린이		65세 이상	
		1회사용	월회원	1회사용	월회원	1회사용	월회원	1회사용	월회원
팔마체육관	1회2시간		30,000		20,000		14,000		9,000
팔마소프트 테니스장 팔마테니스장	1회2시간 조명등	미사용	1,500	20,000	1,000	15,000	700	11,000	450
		사용	2,000	30,000	1,500	20,000	1,000	20,000	600
팔마골프연습장	자 유	10,000	120,000	10,000	120,000	10,000	120,000	3,000	36,000
다목적체육관	1회2시간	1,000	20,000	700	14,000	500	11,000	300	6,000
팔마양궁장	1회2시간	2,000	40,000	1,500	30,000	1,000	20,000	600	12,000
팔마족구장	1회2시간 조명등	미사용	1,500	20,000	1,000	15,000	700	11,000	450
		사용	2,000	30,000	1,500	20,000	1,000	20,000	600
팔마국궁장	1회2시간	1,500	30,000	1,200	24,000	-	-	-	-
팔마인공암벽장	1회2시간	2,500	50,000	2,000	40,000	1,700	34,000	-	-

○ 교육장

용 도	기 준	사 용 료
교 육	1시간	20,000원

○ 상업사용료(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고		
1.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한 영화 촬영	○주간 27,000 ○야간 54,000				
2.	애드벌룬 및 이와 유사한 선전 광고행위	○1개 1일간 5,500 (단, 일출시부터 일몰시 까지)				
3.	팸플릿 프로그램 판매	○ 판매부수 1매당 가격 - 총판매금액 20/100정수				
4.	게시부착 광고물	기준	사 용 료			
		10㎡	• 5일 이내 50,000 - 1일 초과 5,000			
5.	진열 · 전람광고물	기 준	사 용 료			
			주 경 기 장			
			중 계 방송시	중 계 방송외	기 타	
		3㎡이내	100,000	50,000	30,000	1일 1개
		3㎡이상 6㎡이내	150,000	100,000	50,000	1일 1개

현행					개정안				
나. 부대시설 사용료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단위 : 원)				
구분 종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구분 종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방송시설 (앰프, 마이크 등)	교육장 · 정구장	1일 1회	14,000		방송시설 (앰프, 마이크 등)	교육장 · 팔마 소프트테니스장	1일 1회	14,000	
	기타시설	"	40,000			기타시설	"	40,000	
전 광		"	기본료(40,000) · 월기본요금/30 · 실제사용료	스코어판 포함	전 광		"	기본료(40,000) · 월기본요금/30 · 실제사용료	스코어판 포함
일반전기 (조명)	기념관	"	기본료+실제사용한 전기료+부가세	무대조명시 기타시설 사용료 적용 -기본료:월기본료×1/30 ×사용일 -실제사용한전기료:전기사용량×요금단가	일반전기 (조명)	기념관	"	기본료+실제사용한 전기료+부가세	무대조명시 기타시설 사용료 적용 -기본료:월기본료×1/30 ×사용일 -실제사용한전기료:전기사용량×요금단가
	기 타 시 설	"	기본료+실제사용한 전기료+부가세	-기본료:월기본료×1/30 ×사용일 -실제사용한전기료:전기사용량×요금단가		기 타 시 설	"	기본료+실제사용한 전기료+부가세	-기본료:월기본료×1/30 ×사용일 -실제사용한전기료:전기사용량×요금단가
냉 · 난방	기념관	"	· 냉방 - 기본료(20,000)+실제 전기사용 요금+부가세		냉 · 난방	기념관	"	· 냉방 - 기본료(20,000)+실제 전기사용 요금+부가세	
	팔 마 체 육 관	"	· 난방 - 기본료(20,000)+실제 유류사용 요금+부가세			팔 마 체 육 관	"	· 난방 - 기본료(20,000)+실제 유류사용 요금+부가세	
라 이 트		"	- 기본료+실제사용한 전기료 +부가세		라 이 트		"	- 기본료+실제사용한 전기료 +부가세	
운동기구		"	14,000	배구, 배드민턴 네트 및 지주대 세트	운동기구		"	14,000	배구, 배드민턴 네트 및 지주대 세트
공공용지		3.3 ㎡ 당	7,000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단 1회 사용은 10일 이내 로 하며 초과분에 한하여 1일10% 추가징수)	공공용지		3.3 ㎡ 당	7,000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단 1회 사용은 10일 이내 로 하며 초과분에 한하여 1일10% 추가징수)

[illegible]

현행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2. 시대표로 등록된 선수훈련	80%	
3. 전국·도·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순천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80%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80%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80%	
6.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0%	천연잔디구장은 제외
7.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0%	
8.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	80%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1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12.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	50%	
13. 축구장의 조간사용	50%	천연잔디구장, 토·입공휴일 제외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50%	
15.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행한 보호자	50%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16. 65세 이상의 사람	50%	일반사용자
17.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증빙서류”를 소지한 자	50%	
18.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50% 10%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19.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자 및 그 가족	50%	
2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입여성	10%	수영장 월 이용자에 한정하여 감면하거나 5일 연장
21. 수영·배드민턴 일일이용 어린이, 청소년 단체입장	30%	
22.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학습 프로그램운영	50%	협조 공문 제시
23. 장기 이용회원	15% 20%	3개월 6개월

-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 이용료 감면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단, 14호,15호,16호, 23호는 제외)

개정안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2. 시대표로 등록된 선수의 훈련	80%	
3. 전국·도·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순천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80%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100%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80%	
6.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0%	천연잔디구장은 제외
7.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0%	
8.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	80%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1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12.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 학습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0%	
13.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	50%	
14. 축구장의 조간사용	50%	천연잔디구장, 토·입공휴일 제외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1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1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2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50%	
2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50%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4.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지한 사람	50%	

현	행	개	정	안																						
		<table><tr><td>2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td><td>50%</td><td></td></tr><tr><td rowspan="2">26.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td><td>50%</td><td>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td></tr><tr><td>10%</td><td>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td></tr><tr><td>27.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임여성</td><td>10%</td><td>수령장 월 이용자에 한정하여 감면하거나 5일 연장</td></tr><tr><td>28. 수영·배드민턴 일일이용 어린이, 청소년 단체입장</td><td>30%</td><td></td></tr><tr><td rowspan="2">29.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학습 프로그램운영</td><td>50%</td><td>협조 공문 제시</td></tr><tr><td>15%</td><td>3개월</td></tr><tr><td rowspan="2">30. 장기 이용회원</td><td>20%</td><td>6개월</td></tr></table>			2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50%		26.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50%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10%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27.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임여성	10%	수령장 월 이용자에 한정하여 감면하거나 5일 연장	28. 수영·배드민턴 일일이용 어린이, 청소년 단체입장	30%		29.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학습 프로그램운영	50%	협조 공문 제시	15%	3개월	30. 장기 이용회원	20%	6개월
2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50%																									
26.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50%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10%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27.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임여성	10%	수령장 월 이용자에 한정하여 감면하거나 5일 연장																								
28. 수영·배드민턴 일일이용 어린이, 청소년 단체입장	30%																									
29.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학습 프로그램운영	50%	협조 공문 제시																								
	15%	3개월																								
30. 장기 이용회원	20%	6개월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 이용료 감면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적용한다.(단, 15호 ~ 24호, 30호는 제외) ※ 단 25호는 2020. 7. 1.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를 둔 사람부터 적용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38호
----------	--------

발의연월일 : 2020. 11. 19.

발 의 자 : 박계수 의원, 김영진 의원
박종호 의원

1. 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안 제4조)
-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안 제5조)
-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안 제6조)
-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 및 사업, 지원 등 (안 제7조~제9조)
- 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10조~제12조)
- 위탁관리,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안 제13조~제17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써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제7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상시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등)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2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1. 16.

1. 개정이유

- 상위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불부합한 내용 정비
- 순천시민 자긍심 고취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순천시민 1년회원권 도입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람료 면제 내용 일부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수목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 순천시민 1년 회원권 도입에 따른 1년권 시민요금 삭제(안 제5조, 별표1)
- 순천시 관광지 감면 기준 통일을 위한 대상 정비(안 제6조, 별표2)
 - (추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사, 한복착용자
 - (수정) 다자녀가정 세대증 소지자
-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정비계획에 의거한 감면규정 정비(안 제6조, 별표2)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9. 21. ~ 10. 1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9. 17.(여성가족과-1931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11. 2.(국가정원운영과-11348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9. 15.(기획예산실-1261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9. 21.(순천시 공고 제2020-1988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을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으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람료(제4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u>순천시민 1년 회원권</u>	<u>10,000원</u>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비 고>

1.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7.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2]

관람료 면제(제5조 관련)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 어린이
3.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9.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사자.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나. 의사자 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다.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2.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15.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16.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18.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로서 단체관광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19. 한복을 착용한 사람(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에 한한다)
20.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뜻) -----
-----.

1. “국가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순천만국가정원을 말한다.
2. ~ 7. (생략)

1. -----
----- 제18조의 3제1항-----
-----.
2. ~ 7.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관람료(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4조 관련)

관람료(제4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1년권	•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순천시민 1년 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증복 할인 불가
< 비 고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증복 할인 불가

1. “어린이”란 초등학교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7.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2]

[별표 2]

관람료 면제(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5조 관련)

관람료 면제(제5조 관련)

현행	개정안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 설> 3.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만,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및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1. (현행과 같음)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 어린이 3.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 ----- ----- -----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 -----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현행	개정안
<u>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u>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u>자</u> 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9. 「<u>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u><신 설></u>	8. ----- ----- ----- 사람 9. (현행 제8호와 같음) 10.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 유족 중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현행	개정안
10.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중’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11.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순천시민이나 순천시민에게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다른 지역 거주자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13.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1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신 설> <신 설> <신 설> 15.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2. -----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15. (현행 제13호와 같음) 16. (현행 제14호와 같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18.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로서 단체관광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19. 한복을 착용한 사람(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에 한한다) 20. (현행제 15호와 같음)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민 1년회원권 시행(별표1)

- 1년회원권 수입 증가 및 1년회원권 RFID카드 제작에 따른 비용 발생

○ 무료관람 대상 확대에 따른 관람료 수입금 감소 (별표2)

- (제17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각 목의 면제대상자(가. 등록포로 /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 상

- 순천시민 1년회원권 등록자
- 등록포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나. 전 제

○ 추계의 전제

- 순천시민 1년회원권
 - ‘17년~‘19년 낙안읍성, 드라마세트장, 뿌리깊은박물관 순천시민 성인·군인·청소년 입장료수입 평균치 적용
 - ‘17년~‘19년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시민 1년회원권 발급율 평균치 적용
- 국군포로송환자 : 전국 133명(‘20.8월 기준), 연 1회 방문, 성인기준 관람료 적용

○ 추계기간 : 2021년도부터 202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15,915	23,183	23,183	23,183	23,183	23,183
세입(a)	130,895	26,179	26,179	26,179	26,179	26,179
1년회원권	136,215	27,243	27,243	27,243	27,243	27,243
등록포로	△5,320	△1,064	△1,064	△1,064	△1,064	△1,064
세출(b)	14,980	2,996	2,996	2,996	2,996	2,996
1년회원권	14,980	2,996	2,996	2,996	2,996	2,99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14,980	2,996	2,996	2,996	2,996	2,996
시 비	14,980	2,996	2,996	2,996	2,996	2,996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순천시민 1년회원권

- 세입증가 : 27,243천원 [89,324천원(낙안읍성·드라마촬영장·뿌리깊은나무 박물관 '17~'19년 시민 성인, 청소년·군인 평균 수입) X 30.5%('17~'19년 1년회원권 시민 평균 수입율)]

(단위 : 천원)

관 광 지	평 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비 고
총 계	89,324	100,133	97,024	70,819	
낙안읍성	58,907	71,084	64,211	41,428	
드 라 마	29,069	27,980	31,249	27,980	
뿌리깊은박물관	1,348	1,069	1,564	1,411	

(단위 : 천원)

시민권종	평 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비 고
총 계	422,950	487,011	405,377	376,463	
일반권	국가정원	247,556	315,697	221,024	205,947
	습 지	46,144	38,814	47,333	52,286
1년회원권	129,250	132,500	137,020	118,230	수입율 30.5%

- 세출증가 : 2,996천원[1,100원(카드구입비) X 2,724명(예상 발급수)]

○ 등록포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세입감소 : 1,064천원[8,000원(성인) X 전국 133명 X 1회방문]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순천만관리센터 국가정원운영과 과 장 이기정(☎ 749-2722)
- 수익팀장 김순옥(☎ 749-2741)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2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1. 16.

1. 개정이유

- 순천시민 자긍심 고취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순천시민 1년회원권 도입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람료 면제 내용 일부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순천시민 1년 회원권 도입에 따른 순천만국가정원 1년권 시민요금 삭제
(안 제5조, 별표1)
- 순천시 관광지 감면 기준 통일을 위한 대상 정비(안 제6조, 별표2)
 - (추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사, 한복착용자
 - (수정) 다자녀가정 세대중 소지자
-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정비계획에 의거한 감면규정 정비(안 제6조, 별표2)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0. 8. ~ 10. 28.)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0. 8.(여성가족과-2086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0. 6.(기획예산실-1368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0. 15.(순천시 공고 제2020-2090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u>순천시민 1년 회원권</u>	<u>10,000원</u>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비 고>

1.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7.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2]

관람료 면제(제6조 관련)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 어린이
3.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유공자 중 애국지사상과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9.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사자.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나. 의사자 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다.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2.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15.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16.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18.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로서 단체관광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19. 한복을 착용한 사람(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에 한한다)
20.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1년권	• 성인: 30,000원, 청소년·군인: 20,000원, 어린이: 10,000원 • 순천시민: 10,000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람주간할인 등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비 고 >

- “어린이”란 초등학교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관람객을 말한다.
-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2]

관람료 면제(제6조 관련)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 설>

-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순천시민 1년 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람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비 고>

- “어린이”란 초등학교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2]

관람료 면제(제6조 관련)

- (현행과 같음)
-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 어린이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현행 제3호와 같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현행	개정안
<u>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u>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u>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만,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및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u>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u>따라 등록된 자</u>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u>자</u> 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9.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	<u>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u> 6. ----- ----- ----- ----- <u>따른</u> <u>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u> 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 ----- <u>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u> 8. ----- ----- <u>사람</u> 9. (현행 제8호와 같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현행	개정안
<u>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u> <u><신 설></u> 10.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u>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중</u>’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11.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u>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u>”을 소지한 순천시민이나 순천시민에게 장기 및 인체	가. <u>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u> 나. <u>의사자 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u> 다. <u>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u> 11.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2. ----- -----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 -----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현행	개정안
<u>조직 등을 기증한 다른 지역 거주자</u> <u>12.</u>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u>13.</u>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u>14.</u>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15.</u>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u>14.</u> (현행 제12호와 같음) <u>15.</u> (현행 제13호와 같음) <u>16.</u> (현행 제14호와 같음) <u>17.</u>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u>18.</u>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로서 단체관광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u>19.</u> 한복을 착용한 사람(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에 한한다) <u>20.</u> (현행 제15호와 같음)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무료관람 대상 확대에 따른 관람료 수입금 감소(별표2)

- (제17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각 목의 면제대상자(가. 등록포로 /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2. 비용추계의 전제

○ 국군포로송환자 : 전국 133명('20.8월 기준), 연 1회 방문, 성인기준 관람료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입	△5,320	△1,064	△1,064	△1,064	△1,064	△1,064

4. 재원조달 방안 :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세입감소 : 1,064천원[8,000원(성인) X 133명 X 1회 방문]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순천만관리센터 순천만보전과 과 장 허성실(☎ 749-6051)
순천만관리팀장 현동순(☎ 749-6071)